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769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임종득 · 김기웅 · 서천호
이달희 · 백종현 · 한기호
안상훈 · 강명구 · 강선영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사용·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새마을문고중앙회,”를 “새마을문고중앙회, 청년새마을연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u>새마을문고중앙회</u>,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 ----- ----- ----- -----<u>새마을문고중앙회, 청년새마을연대,</u>----- ----- ----- ----- -----.</p> |